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2. 2.

발 의 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0년 9월 26일 송석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년 12월 13일 배기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년 12월 15일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17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이 2002년 1월 23일에 각각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2년 1월 23일에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 2. 22까지 2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4건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다.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기 4건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재심사함.

라.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전 결산예비심사의 완료, 국정감사계획서의 의결 및 증인·참고인의 출석 등 국정감사준비 내지 절차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국정감사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매년 9월 10일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 나.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위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함(안 제4조제3항).

법률 제 호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定期會 集會期日의 다음 날”을 “9月 10日”로 한다.

제4조제3항중 “議員數”를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로 한다.

제7조제3호중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4. (생 략) 第10條(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 (생 략) <u><신 설></u></p> <p>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p>	<p>4. (현행과 같음) 第10條(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